

동의 및 합의서

보험종목 :

계 약 자 :

피보험자 :

상기 피보험자님은 DB손해보험(이하 “귀사”와 같습니다)에 상기 보험을 가입한 이후, 년
월 일 직업 / 직무를 변경하게 된 사실을 귀사에 통지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약관(계약후 알릴의무) 및 상법(제 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바 있고, 금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본인이 “계약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귀사의 변경된 위험률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에 동의하며, 향후 추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번에 합의한 변경된 급수에 따른 위험률에 따라서 보상됨에 동의 및 합의합니다.

1. 위반사항

구 분	계약당시 직업	사고당시 직업
직업		
급수		

2. 비례보상 요율안내

해당담보	변경전 요율	변경후 요율

- 보험금 청구권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상기 비례보상 금액은 본인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통지의무 위반
비례보상에 동의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향후에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피보험자) :

(인감날인)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